

「평창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규칙안은 2022년 01월 13일 이명순의원이 대표발의하고, 2022년 01월 17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.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1.13. 시행)에 따라,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.
- 평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상황의 관리, 휴가 및 출장의 절차, 업무인계 규정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규칙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의장의 의무(안 제2조)
- 다. 공무원 휴가·지각·조퇴·외출 및 출장 등 근무상황 관리방법 및 절차(안 제3조 ~ 제7조)
- 라. 공무원 전보·파견·전출·휴직·정직·직위해제·면직 시 업무의 인계(안 제8조)
- 마. 공무원 퇴근 시 문서 및 물품의 보관(안 제9조)

3. 검토의견

○ 본 규칙안은

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의 관리, 휴가 및 출장의 절차, 업무인계 규정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.

○ 규칙안 주요내용은

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의장의 의무

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무원 휴가·지각·조퇴·외출 및 출장 등 근무상황 관리방법 및 절차

안 제8조에서는 공무원 전보·파견·전출·휴직·정직·직위해제·면직 시 업무의 인계

안 제9조에서는 공무원 퇴근 시 문서 및 물품의 보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참고자료: 관계법령

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,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」